

8. 河川法施行令中改正令(案) 立法豫告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182호 1997. 6. 2

주 요 골 자

- 가. 하천법에 의한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할 때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만 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나. 하천예정지로 지정되면 하천구역에서와 같이 공작물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등 10종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하천공사에 지장이 있는 공작물설치등 4종의 행위만 제한함.
- 다. 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도시, 환경, 법률, 경제분야 전문가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함.
- 라. 하천의 자연성 유지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년생 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함.
- 마. 하천의 수질오염방지 및 탈법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 댐상을 운항하는 농·어업 및 사람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선박도 운항허가를 받도록 함.
- 바. 하천구역안에서 하천의 수량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하천관리 권한의 위임을 확대

개정이유

하천관리에 따른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관리위원회에 관련전문가를 위촉하여 하천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관리제도를 개선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